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2.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협의(狹義)의 진료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광의(廣義)의 의료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토록 함에 있어 그 대행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까지 포함한 의료업무로 확대 변경함(안 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
 - 진료업무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행위
 - 의료업무 : 진료업무와 간호사 및 조산사의 의료행위를 통칭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진료업무”를 “의료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진료업무”를 “의료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진료업무”를 각각 “의료업무”로 한다.

제9조중 “진료업무”를 “의료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 건 소
임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보 건 소 장 심 평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건행정담당 한 영 회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미 연 (2551)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업무대행절차) ①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전에 <u>진료업무</u> 대행의 필요성 및 업무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업무대행절차)①----- ----- <u>의료업무</u>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업무대행계약) ①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u>진료업무</u>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임자를 선정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 (업무대행계약) ①----- ----- <u>의료업무</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u>진료업무</u> 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u>진료업무</u> 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4. <u>진료업무</u> 수행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재정형편상 <u>진료업무</u> 대행을 계속 할 수 없는 때 ② (생 략)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 ----- 1.----- <u>의료업무</u> ----- ----- 2.----- <u>의료업무</u> ----- ----- 3.----- 4. <u>의료업무</u> ----- ----- 5.-----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u>진료업무</u> 를 수행하는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u>의료업무</u> ----- -----